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85
----------	-------

발의연월일 : 2026. 1. 23.

발 의 자 : 오세희 · 박희승 · 맹성규
채현일 · 위성곤 · 박수현
서영교 · 전진숙 · 안태준
이주희 · 최혁진 · 이춘석
이용우 · 김원이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 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제4호 신설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행한 자”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다른 개별가맹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대여받아 수취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략)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조(과태료)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u>수행한 자</u>	2. ----- ----- -----수행하거나 자신의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다른 개별 가맹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

3. · 4. (생 략) ② · ③ (생 략)	<u>· 대여받아 수취한 자</u>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